

제 1665 호
1992. 7.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 731-8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480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2
------------------------------------	---

영 문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경제위기 탈탄탈고 내가먼저 일터로”

규 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2. 7. 1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①

●서울특별시규칙제248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 1) 본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 "1,867"을 "1,866"으로, 별정직 정원 "69"를 "68"로, 정원내용 중 7급 상당 "37"을 "36"으로, 일반부녀상담원 "2"를 "1"로 한다.

제2조제2항의 (별표 2-25)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 중 6급정원 "15"를 "9"로, 정원내용 중 행정직 "11"을 "5"로 한다.

8급정원 "63"을 "19"로, 정원내용 중 행정직 "60"을 "16"으로 한다.

9급정원은 "31"을 "11"로, 정원내용 중 행정직 "28"을 "8"로 한다.

기능직 정원 "83"을 "39"로, 정원내용 중 8등급 "3"을 "1"로 하고, "사무보조원 2(타자 2)"를 삭제한다.

9등급 "22"를 "13"으로 하고, "사무보조원 9(타자 9)"를 삭제한다.

10등급 "58"을 "33"으로 하며, "사무보조원 31(타자 31)"을 삭제하고, 전산원 "5"를 "3"으로 하며, 합계정원 "218"을 "10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